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 개정과 관련됩니다.
2. 우리 부는 럽피스킨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3.11.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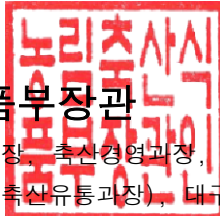
- 아 래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방역정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축산정책과장, 축산경영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기획조정과장), 서울특별시(동물보호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과장), 광주광역시(농업동물정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사단법인 한국사슴협회장, (사)한국오리협회, (사)한국육계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양계협회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전국한우협회,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사단법인 친환경축산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주무관

황정은

사무관

김동우

구제역방역과 전결 2023. 11. 13.

장

김정주

협조자

시행 구제역방역과-8123

(2023. 11. 13.)

접수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544

팩스번호 044-868-0469

/ hje011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함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